

대학혁신위원회 규정

제정 2022. 04. 25.

개정 2023. 07. 0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운영」에 따라 청강문화산업대학
교(이하 “본교”)의 자율혁신계획을 중심으로 대학 자체투입재원, 추진 중인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율혁신계획의 달성을 위한 투자계획의 수립 및 사업 전반의 성과
에 대해 유기적으로 관리 운영하며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자체투입재원,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운영의 총괄적 점검
2. 대학 자체투입재원,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간 예산배정 계획 및 중복성 점검
3. 중앙정부·지자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의 총괄적 관리 점검
4. 대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정회계 모니터링
5. 기타 그 밖에 재정지원사업 간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및 운영)

1.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 교비회계 예산부서장, 산학협력단장, 학생위원, 주요 재정지원
사업(사업비 총액 3억원 이상) 책임자로 구성한다.
2.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위원장은 둘 수 있다.
3.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과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한다.
6.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7.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선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무) 본 위원회의 사무는 대학의 예산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5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사안이 매우 중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
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부칙

- ① 이 규정은 2022년 4월 25일자로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2023년 7월 7일자로 시행한다.